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현지교통비"를 "일비"로, "가족이전비로"를 "가족여비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